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급여결정 및 통지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, 북구

내 용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1조, 제22조, 제26조 및 보건복지부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」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권자와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,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급여신청에 대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요지, 급여종류·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되,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6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및 북구의 사회보장급여(기초생계) 신청 건에 대한 보장 결정일을 확인한 결과, ○○○ 등 20명의

기초생계급여 신청 건에 대한 보장결정을 근로능력평가 회신 지연 등의 사유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2일을 초과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 결정통지 기한을 초과하였다.

조치할 사항 **광주광역시 동구청장, 북구청장은**

[주의]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